

2023. 2.

정 관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정 관

제정 1997.4.15.
개정 1999.4.9.
개정 2000.3.17.
개정 2002.2.21.
개정 2003.2.21.
개정 2004.2.24.
개정 2006.2.16.
개정 2007.2.7.
개정 2011.2.23.
개정 2013.2.22.
개정 2014.2.20.
개정 2015.2.23.
개정 2016.2.23.
개정 2019.2.26.
개정 2023.2.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0.3.17.>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부산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으로 문화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2.16., 2016.2.23.>

1. 부산바다축제 및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및 새해맞이 시민의중 타중행사 <개정 2019.2.26.>
2. 부산불꽃축제
3. 국제교류문화행사

- 4. 기타 지역문화행사 등
- 5. 삭제 <2006.2.16.>
- 6. 연구, 컨설팅, 교육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2.21.>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함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2.16.>
 ②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14.2.20.>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2.20.>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4.2.20>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② 연속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회원에 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14.2.20.>

제10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조직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4.2.20.>

1. 조직위원장 : 1인
2. 부조직위원장 : 2인
3. 이 사 : 10인 이상 25인 이내 (조직위원장, 부조직위원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다. 부산광역시장 궐위 시에는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조직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4.9, 2014.2.20., 2023.2.22.>

② 부조직위원장은 본회 집행위원장과 부산광역시 축제진흥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개정 2003.2.21., 2004.2.24., 2006.2.16., 2011.2.23., 2014.2.20., 2015.2.23., 2019.2.26.>

③ 이사의 선출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승인하고,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14.2.20.>

④ 선출직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2.22., 2014.2.20.>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당해 연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임원이 사망하였거나 건강 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단,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2016.2.23.>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조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2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4.2.20.>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9.4.9., 2014.2.20.>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직위원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조직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직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는 부조직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20.>

[제목개정 2014.2.20.]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구성원은 제7조의 회원, 임원, 집행위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6.2.23.>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20.>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2.20.>

③ 총회의 소집은 조직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4.2.20.>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2.20.>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6.>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0.>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제공·대여·취득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2.20.>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의2(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출석회원 2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총회 의사록 공증축탁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명날인한 출석회원 3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23.]

제5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0.>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9.4.9., 2014.2.20.>

③ 임시이사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2.20.>

④ 이사회의 소집은 조직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27조(이사회 소집에 특례)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4.2.20.>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의결) ① 조직위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14.2.20.>

- ② 제1항의 서면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조직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14.2.20.>

[제목개정 1999.4.9.]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2.20., 2023.2.22.>

-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삭제 <2014.2.20.>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개정 2014.2.20.>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2.20.>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조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집행위원회 등

제31조(집행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제목개정 2000.3.17., 2004.2.24.]

제32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부집행위원장 1인, 부산광역시 축제진흥 담당과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2016.2.23., 2019.2.26.>

②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부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취임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2016.2.23.>

③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④ 집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에 제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4.2.20.>

1. 본회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제목개정 2000.3.17., 2004.2.24.]

제33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조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본회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특수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실행위원회 구성여부 심의 및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00.3.17., 2004.2.24.]

제34조(집행위원회의 운영) 집행위원회의 본회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3.17., 2004.2.24., 2014.2.20.>

[제목개정 2000.3.17., 2004.2.24.]

제35조(실행위원회) ① 전문성·특수성이 요구되는 본회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구성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4.2.24., 2014.2.20.>

②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장 1인, 부실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후 사업이 종료되어 결과보고회 등 각종 서

류의 정산 등 행사와 관련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4.2.24., 2014.2.20.>

③ 실행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2.24., 2014.2.20.>

④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회 사업의 기획, 프로그래머 선정, 프로그램 심의 등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행사의 기획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04.2.24., 2014.2.20.>

[전문개정 2000.3.17.]

제36조(자문위원회) ① 본회 사업에 관하여 조직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2.20.>

② 자문위원회는 언론계, 교육계, 재계, 예술계, 사회단체 등 각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조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2.20.>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21.>

제39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2.20., 2015.2.23.>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개정 2019.2.26.>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2.21., 2014.2.20.>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사업운동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6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3.2.2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4.2.20.>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3.17., 2013.2.22., 2014.2.20., 2023.2.22.>

④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0.3.17., 개정 2013.2.22., 2014.2.20.>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2014.2.20.>

[제목개정 2013.2.22.]

제9장 보 칙

제47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개정 1999.4.9.>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1999.4.9., 2019.2.26.>

제48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삭제 <2007.2.7.>

제50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2.>

[제목개정 2023.2.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창립당시에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조(정관개정)

- ① 1999년 4월 9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2000년 3월 17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③ 2002년 2월 21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④ 2003년 2월 21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⑤ 2004년 2월 24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⑥ 2006년 2월 16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⑦ 2007년 2월 7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⑧ 2011년 2월 23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⑨ 2013년 2월 22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⑩ 2014년 2월 20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⑪ 2015년 2월 23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⑪ 2015년 2월 23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⑬ 2019년 2월 26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⑭ 2023년 2월 23일 개정(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